

의안번호	제 660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330 회)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0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자격요건 및 회의 개최시기 조정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문단 위원의 연임 제한 (안 제4조)
 - 연임 제한 없음 → 한 차례만 연임
- 자문단회의 운영 규정 보완 (안 제6조)
 - 연2회 정기회의 개최 → 필요할 경우 개최
- 자문단 간사의 직위 명칭 변경(안 제12조)
 - 지역안전팀장 → 안전총괄업무과장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자문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 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도지사 및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문단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자문)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5. (생략) 6.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2. (생략)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생략)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 (생략)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6조(자문단회의) ① 도지사 및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의견청취)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제8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안전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 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